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용총포등의 ‘제조’에 ‘세척 등의 공정’을 포함〉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38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군용총포등 ‘제조’ 범위에 ‘세척·수거·분해’ 등 공정	2
2. 군용총포등 제조·저장시설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	12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2) 발의연월일 : 2026. 7. 8.
- 3) 회 부 일 : 2026.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의 사업장 경내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현행법령상의 ‘제조·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음.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의 경우 안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군용총포등의 ‘제조’ 범위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

- 개정안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함)의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을 받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 <u>군용총포·도검·화약류</u>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u>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u> 등에 관한 허가 및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 <u>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u> ----- ----- ----- -----제조(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현행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은 군용총포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과 감독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¹⁾

이는 일반 총포·화약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 등 허가신청이 관리하는 반면,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그 군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별도의 허가·감독을 하도록 하는 특별관리체계라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²⁾은 방위사업청

- 1) 「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①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과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 ②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①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군용총포·도검류의 경우에는 제9호로 한정하고, 군용화약류의 경우에는 제5호는 제외한다)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1. 5. 11., 2022. 2. 11.>
1.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증축·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 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 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증축·변경하려는 경우
- 나.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 제6항, 이영 제71조 제2항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증축·변경하려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증축·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 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증축·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나.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 제6항, 이 영 제71조 제2항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증축·변경

장의 허가대상을 제조업, 제조품목 추가, 제조시설 신축·증축·변경 및 사용, 수입·수출, 양도·양수, 소지, 저장, 운반 및 폐기 등 10개 유형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등의 제조업, 제조품목 추가, 제조시설의 신축·증축·변경·사용 또는 저장에 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³⁾

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 군용총포등을 수입·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조달계약에 따라 군에 납품하기 위한 경우

다. 제5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목적에 따른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라. 각군이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경우

가. 제1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군용총포등을 제조시설 내부에서 소지하는 경우

나.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출허가, 양도·양수허가, 저장허가, 운반허가, 폐기허가(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 저장, 운반, 폐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소지하려는 경우

다. 각군이 소지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이 아닌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경우

가. 군부대 탄약고 등 군부대 부지 내 시설에 저장하려는 경우

나. 각군이 저장하려는 경우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경우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 영역(경계가 맞닿은 복수의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영역으로 간주한다) 내에서 운반하려는 경우

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군용총포등(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에 시제품 생산 등을 하게 함으로써 방산업체등이 관리 중인 군용총포등을 포함한다)을 운반하려는 경우

다. 국방기술품질원법 제32조 제6항, 이영 제71조 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라. 각군이 운반하려는 경우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가. 제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군용총포등을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폐기하려는 경우

나. 각군이 폐기하려는 경우

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은 제조시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 제조시설의 구조·부수설비의 안전성, 제조시설의 방호에 관한 안전성 등을 허가 시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허가요건으로 ① 제조시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 확보, ② 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 확보, ③ 제조시설의 방호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④ 군의 소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 유지 및 품질보증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⁴⁾는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수립·준수, 종업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포함하는 안전점검계획 수립·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군용총포등 제조·저장시설의 안전관리는 허가 전에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와 허가 후 실시하는 ‘안전검사’로 구성 되어 있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①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수립해야 하고,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업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 ③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 검사 및 안전검사(국과연 수행)]

구분	안전성 검사	안전검사
근거	시행령 제66조제3항	시행령 제66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시점	허가 전(사전)	허가 후(사후)
횟수	신청 건별 1회	매년 1회 이상 정기
성격	사전적 안전성 확인	사후적 안전관리
기준	국과연소장이 별도 수립	국과연소장이 별도 수립

□ 방위사업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가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77건, 2022년 128건, 2023년 186건, 2024년 157건, 2025년 110건의 개선요구사항이 각각 확인되었고, 해당 개선사항은 모두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군용총포등 허가 사업장 안전검사 결과]

구분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2021년	· 날짜 : '21. 7. 27(화) ~ 11.9.(화) · 허가받은 총 60개 사업장에서 77건의 개선요구 사항 도출	조치완료
2022년	· 날짜 : '22. 6. 29.(수) ~ 8. 31.(수) · 허가받은 총 64개 사업장에서 128건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조치완료
2023년	· 날짜 : '23. 3. 15.(수) ~ 9. 12.(화) · 허가받은 총 71개 사업장에서 186건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조치완료

2024년	· 날짜 : '24. 1. 25.(목) ~ 8. 27.(화) · 허가받은 총 72개 사업장에서 157건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조치완료
2025년	· 날짜 : '25. 3. 11.(화) ~ 8. 28.(화) · 허가받은 총 74개 사업장에서 110건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조치완료

* 자료: 방위사업청

□ 이 개정안의 추진 배경이 된 폭발사고는 2026년 6월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 세척공실에서 발생하였는데, 해당 세척공실은 방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시설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같이 화약류를 직접 제조하는 주된 시설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화약류 또는 그 잔류물을 취급하는 세척·수거·분해 등의 부속시설도 화재·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 및 허가 후의 정기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5)에서도 허가 여부를 결정할

5)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군용총포·도검류의 경우에는 제9호로 한정하고, 군용화약류의 경우에는 제5호는 제외한다)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때 ‘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용총포등의 제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위험성이 있는 부속시설을 허가·감독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군용총포등의 세척·수거·분해 등을 취급하는 부속시설이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 제53조제1항의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 자체를 포함하는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첫째,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허가·안전관리 체계는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구조·부수설비·방호·안전거리 등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 설비의 안전, 작업방법,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 보호 등 작업과정에서의 산업안전·보건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⁶⁾

이 경우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하 이 항에서 “제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3. 제조시설의 방호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군의 소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의 유지 및 품질보증을 확보할 것
- 6)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참조

따라서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 자체를 「방위사업법」상 독립적인 허가·감독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규율 범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안전관리 간 규율영역이 일부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나타난 제도상 문제는 세척이라는 작업행위 자체에 대한 안전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군용화약류 또는 그 잔류물을 취급하는 세척공실이 방위사업청의 제조시설 등의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감독대상을 공정 전반으로 확대하기보다, 군용총포등의 세척·수거·분해 등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속시설도 제조시설 등의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현행 제도체계와 보다 부합할 수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작업까지 이에 포함되는지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방위사업법」은 제53조7)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규의 명확성 원칙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허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허가·감독 대상을 ‘공정’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과 고용노동부 간 소관이 중첩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시설 중심의 허가·감독체계를 유지하되, 세척·수거·분해 등의 취급이 이루어지는 부속시설이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제조”의 개념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 자체를 직접 포함하는 경우 방위사업청과 고용노동부 간 안전관리 업무의 중첩이나 법 적용상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의 개념 자체를 확대하기보다는 세척·수거·분해 등의 작업이

7)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① 삭제<2020. 2. 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9., 2016. 12. 20., 2024. 1. 16.>

1. 제2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 제2항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53조 또는 제57조 제2항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제63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루어지는 부속시설을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허가·감독의 대상에 관한 자구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 <u>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u> ----- ----- ----- ----- <u>제조(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단서 신설>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 ----- ----- -----제조----- ----- -----, 이 경우 제조에 관한 허가과 감독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는 군용총포등 또는 그 잔류물의 세척·수거·분해 등 제조과정에 부수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한다.

2. 군용총포등 제조·저장시설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

□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 <u><신 설></u>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 ② <u>방위사업청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 현행 「방위사업법」 제53조는 방위사업청장의 군용총포등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 안전검사의 주기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제4항⁸⁾은 제조시설 사용

8)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④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⑤영 제66조의2 제4항및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31.>

1.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허가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가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관련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실제로 매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53조제2항은 새로운 종류의 안전검사를 창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하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정기 안전검사의 기본적인 실시의무와 최소 실시횟수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정기 안전검사는 허가 이후에도 군용총포등 제조·저장시설의 구조·부수설비·안전거리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써, 최근 5년간 실시된 안전검사에서도 매년 다수의 개선요구사항이 확인되는 등 군용총포등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또한 일반 총포·화약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9)에서 정기안전검사의 기본적인 실

-
2.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의 전기·소방 설비 등 부수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3.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이별표 1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 3. 31., 1996. 6. 20.>
1. 꽃불류제조소외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에 부속된 동력실 및 준비실, 니트로셀룰로우스의 초화실 및 정제실, 폐산처리장
 2. 꽃불류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 및 원료화약품저치소·폐약처리장
 3. 화약류저장소중 1급 및 2급이상의 저장소

시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하위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군용총포등 제조·저장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안전검사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일반 화약류의 안전관리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방위사업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용화약류 관련 42개 사업장에 총 595개의 제조·저장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정안 시행과 함께 종전 허가대상에서 누락된 부속시설 등을 추가로 파악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검사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설의 위험도·화약류 취급량·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검사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68조(정기안전검사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수기가 있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성수기 직전에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제8조및제29조내지제44조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3. 피뢰장치·비상벨장치·소화설비등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유사 입법례: 총포화약법령상 참고조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꽃불류제조소외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에 부속된 동력실 및 준비실, 니트로셀룰로우스의 초화실 및 정제실, 폐산처리장
2. 꽃불류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 및 원료화약품저치소·폐약처리장
3. 화약류저장소 중 1급 및 2급이상의 저장소

제68조(정기안전검사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수기가 있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성수기 직전에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8조 및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3. 피뢰장치·비상벨장치·소화설비등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문 의 처

02)6788-5312
